

대한민국지방의회법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87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용혜인 · 손 술 · 김남희
이개호 · 주철현 · 조계원
이수진 · 한창민 · 이언주
문대림 · 김원이 · 신정훈
서미화 · 문금주 · 소병훈
의원(15인)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폭넓은 의정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서, 의원직에서 퇴임하더라도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공동체 회복,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함.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의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음.

현재 퇴직한 지방공무원, 경찰, 교육, 소방, 군인, 교정 공무원 등 주요 공직퇴직자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단체를 설립·운영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반하여 퇴임한 지방의원들의 경우

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조직하였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역임한 전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정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다. 의정회의 정회원은 퇴임한 지방의회의원, 명예회원은 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정분야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입법 제안, 지역간의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활동, 주민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건의 등의 활동,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주최·주관, 국내·외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 활동 등의 사업을 실시함(안 제6조).

마. 의정회는 회장·부회장·이사·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하는 총
회를 두고,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둠(안 제7조
및 제11조).

바. 의정회 재정은 회비 및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
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정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정
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설립하여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의정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의정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의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의정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의정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정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5조(조직 등) ① 의정회는 중앙회,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의정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의정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입법 제안
2.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3. 주민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건의
4.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토론회, 세미나, 주최 및 주관
5. 국내·외 의정 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 활동
6.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3. 예·결산 및 기본사업계획
4. 회비의 징수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의정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지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 임원) ① 의정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

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의정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의정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의정회의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4조(사무 부서) ① 의정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재정) ① 의정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

민국지방의정회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전에 설립된 각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및 의정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의정회의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이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의 회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의정회의 임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